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9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04.01.07.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04%에 불과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부 「하수도조례 표준안」('10.9.30) 및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군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하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94원/m³ ⇒ 104원/m³)
- 하수도 업종 축소 : 4종 ⇒ 3종

나.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리 개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7조 ~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4조제6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30조)

(1) 중수도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제11조)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안 제26조)

(3)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안 제13조제1항)

(4)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안 제24조제6항)

(5)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의 규정(안 제28조제2항)

(6) 「지방세법」의 예 ⇒ 지방세 징수의 예(안 제30조)

다. 하수도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 단서, 별표 4, 별표 5)

(1)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 신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산정(안 제22조 단서, 별표 5)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예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6. 14. ~ 7. 04.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 서식”으로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17조제2호다목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 6”을 “별표 5”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하수도법 시행령」, 규칙”을 “법, 영,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별표 7”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중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를”로 한다.

제30조 제목 “「지방세법」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하며, 별지서식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규칙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규칙 지정기준) ----- -----제15조제2항</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사용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p> <p>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중수도를 관리하여야 한다.</p> <p>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p> <p>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p> <p>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p> <p>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p>	<p><삭 제></p>
<p>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p> <p>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p> <p>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p>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p> <p>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p> <p>② ~ ⑤ (생략)</p>	<p>제11조(공사시행) ① -----</p> <p>-----</p> <p>-----</p> <p>1. -----</p> <p>-----</p> <p>----- 「하수도법 시행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p> <p>-----</p> <p>3. -----</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표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광경(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p> <p>----- 별지 서식-----</p> <p>-----</p> <p>-----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략)</p> <p>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별표 1----- ----- ----- -----</p> <p>③ ----- ----- -----별표 1----- -----별표 2----- -----</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p> <p>1. ~ 2. (생략)</p> <p>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p> <p>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p> <p>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량</p> <p>3. (생략)</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가. ----- ----- -----</p> <p>나. ----- ----- -----</p> <p>다. -----제3조제1항제3호----- -----</p> <p>3. (현행과 같음)</p>
<p>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 -----별표 3-----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 2. (생략)</p> <p>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u>별표 5</u>에 따름</p> <p>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u>별표 6</u>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u>범위 안에서</u>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p> <p>5. ~ 6.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 <u>별표 4</u> -----</p> <p>4. -----</p> <p>----- <u>별표 5</u> -----</p> <p>----- <u>범위에서</u> -----</p> <p>-----</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p> <p>1. (생략)</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u>별표 6</u>에 따라 산정함</p>	<p>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u>별표 5</u>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u>법·「하수도법 시행령」·규칙</u>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법, 영, 규칙</u> -----</p> <p>-----</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u>별표 7</u>에 따름</p> <p>2. ~ 3. (생략)</p> <p>② ~ ⑤ (생략)</p> <p>⑥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된 분뇨 처리 수수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p> <p>-----</p> <p>-----</p> <p>-----</p> <p>1. -----</p> <p>----- <u>별표 6</u>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p>----- 「지방세기본법」 -----</p> <p>-----</p>
<p>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범위에서</u> -----</p> <p>-----</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p> <p>2. <u>제7조에 따라 중수도</u>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p> <p>3. <u>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u>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p> <p>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u>재이용수</u>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u>별표 8</u>과 같다.</p>	<p>제26조(감면) ① -----</p> <p>-----</p> <p>-----</p> <p>1.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p> <p>-----</p> <p>2. <u>중수도</u> -----</p> <p>-----</p> <p>3. <u>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u> -----</p> <p>-----</p> <p>4. -----</p> <p>-----</p> <p>② -----</p> <p>----- <u>재처리수</u> -----</p> <p>----- <u>별표 7</u> -----</p>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126조까지를 -----</p>
<p>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p>	<p>제30조(준용) ----- ----- ----- ----- 지방세 징수 -----</p>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밖에() 배제						
	설치위치: 읍·면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밖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청인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거창군수 귀하 (서명 또는 인) </div>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이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구분(m ³)	m ³ 당 단가(원)	비고
가정용	1 ~ 20	104	
	21 ~ 30	143	
	31 이상	192	
일반용	1 ~ 30	121	
	31 ~ 50	159	
	51 ~ 100	194	
	101 ~ 300	224	
	301 이상	278	
산업용	1톤당	125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5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m³/일)

구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 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 기존 건 축물 오수 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 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봄		
						7	18	-			
						11	22	11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 <10 미부과
								7	15	5	(A)+(B)+(E) >10 초과량 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 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4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m³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1회의 신축,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m³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bigcirc \text{ m}^3 \text{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triangleright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triangleright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함.
-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22원	15원	137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4,945원	1,125원	16,0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011원	150원	1,161원

[별표 7]

중수도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6조제2항)

업종 구분	감 면 비 율		비 고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일 반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산 업 용	50퍼센트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일 교